
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5조의 제목 “(자체처분 신고)”를 “(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제출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영 제107조제2항”을 “영 제107조제2항 및 제3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한다.

제95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
2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
3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
4.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
5.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
6.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
7. 자체처분절차서

③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의2서식과

같다

④ 제3항의 사전검토 신청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자료
2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에 관한 자료
3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자료

⑤ 위원회는 영 제107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,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별지 제8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8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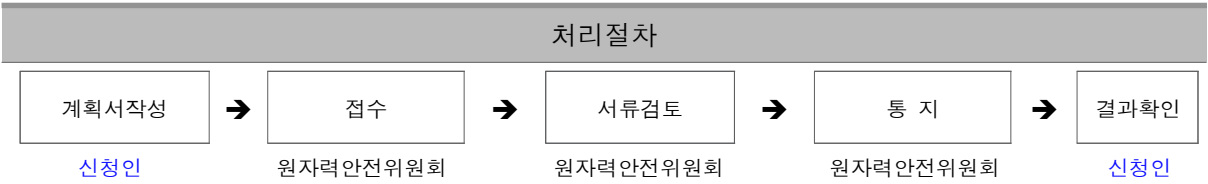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20일
신청인	소속명	본사		
		사업소		
	주소	본사 (전화번호:)		
		사업소 (전화번호:)		
	대표자	성명		
		생년월일		
	방사선 안전관리자	직위	성명	
		생년월일		
	처분예정 일시			
	처분예정 장소			

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」 제107조제2항 및 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2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 3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 4. 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 5. 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 6. 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 7. 자체처분절차서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

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30일	
신청인	소속명	본사			
		사업소			
	주소	본사 (전화번호:)			
		사업소 (전화번호:)			
	대표자	성명			
		생년월일			
	방사선 안전관리자	직위	성명		
		생년월일			
신청 내용	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정보	종류	수량		
		발생원	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		
	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				

「원자력안전법 시행령」 제10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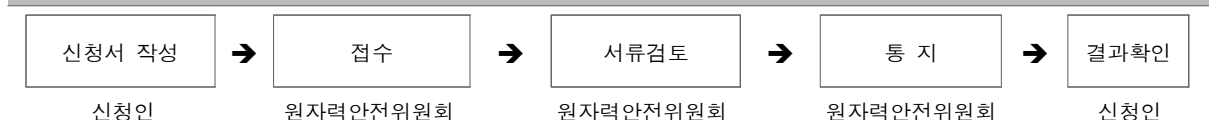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1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자료 2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에 관한 자료 3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5조(자체처분 신고) ① 영 제107조제2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는 별지 제84호서식과 같다.	제95조(자체처분계획서 및 사전검토 신청서 제출) ① 영 제107조제2항 및 제3항----- --.
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<u>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</u>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1. <u>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</u>
	2. <u>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</u>
	3. <u>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별 표면방사선량률과 핵종별 농도 및 그 산출근거</u>
	4. <u>자체처분 방법 및 예정 목적지</u>
	5. <u>자체처분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수량 및 관리방법</u>
	6. <u>자체처분에 따른 예상 피폭 방사선량이 위원회가 정하여</u>

<u><신 설></u>	<u>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</u> <u>을 만족함을 입증하는 자료</u> <u>7. 자체처분절차서</u>
<u><신 설></u>	<u>③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는 별지 제84호의 2서식과 같다</u> <u>④ 제3항의 사전검토 신청서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침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</u> <u>1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자료</u> <u>2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원과 발생일시 또는 발생기간에 관한 자료</u> <u>3. 자체처분 대상 방사성폐기물의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자료</u>
<u><신 설></u>	<u>⑤ 위원회는 영 제107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, 영 제107조제7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u>